

제1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포상 안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91년 최대 사망자수를 기록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통계관측 이래 최저 사망자수 달성이 예측됩니다. 이에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관련 각 분야에서 교통문화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고자 제17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하오니, 아래 추천 요령을 참조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추천 대상자

- (추천대상)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에서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 － 시민봉사단체, 유관단체(운수단체 등), 공공기관(분야별 공사공단), 경찰청·지자체 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 및 단체
 - － 교통사고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헌신한 의인(숨은 공로자 발굴) 등
 - －交通安全 관련 프로그램 기획 또는交通安全 교육·연구 등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에 기여한 종사자 및 단체

○ 포상기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교통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 한함

- － 우리나라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로자
- －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5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자

- 자율 봉사 단체의 소속원인 경우, 봉사단체의 활동 경력을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운수업체 단체 표창은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낮은 회사
 -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 등으로 판단
- 기타 일반적 기준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2.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

- (개인)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 표창이 금지됨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우수기관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아니함

○ 장관 표창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제안제도, 각종 대회 표창,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및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포상 규모

훈 격	인 원
정부 포상	○○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명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표창	○○명

4.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추천자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기관장, 경찰서장, 공공기관장, (지역)운수단체장, 언론기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장 및 위에 준하는 기관장([봉사단체장 불가](#))
- 제출기한 : 2024. 5. 2(목) ~ 2024. 5. 28(화)
- ※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 제출 및 전자우편(한글파일, 스캔파일)
- 제출서류 [[아래 필수서류 원본, 한글, 스캔파일 모두제출](#)]

① [서식1] ~ [서식6] 원본서류(출력물) 및 증빙자료

② [서식1] ~ [서식6] 한글파일(hwp) (e-mail 제출)

③ [서식1] ~ [서식6] 스캔 파일(pdf) (e-mail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증빙자료를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1]	○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포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 2]	○ 양식과 맞게 작성
공적요약서 [서식 3]	○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제출서류	작성요령									
공적조서 [서식 4]	○ 공적조서는 반드시 붙임 서식 사용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 <table><tr><td>구분</td><td>지자체</td><td>민간 기관(단체)</td></tr><tr><td>조사자</td><td>소관과장</td><td>소관부서장</td></tr><tr><td>추천관</td><td>자치단체장</td><td>기관장, 단체장</td></tr></table> ※ 반드시 표·그림은 제외하고 2,000자 이상 (A4 3매 이상,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구분	지자체	민간 기관(단체)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추천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구분	지자체	민간 기관(단체)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추천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현지확인서 [서식 5]	○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 6]	○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증빙자료	○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용운전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 봉사단체 회원의 경우 입회확인서 등 ○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속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타	○ 양식 변경 금지 ○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원본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고, 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은 이메일로 제출 * 날인·직인이 있는 서류는 원본 스캔파일 제출									

○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접수처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서울	조성미 차장	02-309-5000 angela@kotsa.or.kr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3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경기 남부	김아름 연구원	031-297-5000 arkim@kotsa.or.kr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분부 안전관리처
대전세 종충남	김은지 대리	042-933-4325 kimej@kotsa.or.kr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31 3층(문평동 83-1)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대구 경북	정나혜 연구원	053-794-3812 nahye@kotsa.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 2층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안전관리처
부산	이동원 연구원	051-315-5000 tuna@kotsa.or.kr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56, 1층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안전관리처
광주 전남	손희상 차장	062-606-7616 hssohn@kotsa.or.kr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96, 3층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
경기 북부	이인성 과장	031-837-7603 koora0921@kotsa.or.kr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2층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분부 안전관리처
인천	손나영 선임	032-830-5904 sonny@kotsa.or.kr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안전관리처
강원	이윤희 부교수	033-240-0133 yhlee6372@kotsa.or.kr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2층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안전관리처
충북	이성호 연구원	043-262-6552 shlee@kotsa.or.kr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안전관리처
전북	공선우 차장	063-212-4740 beauty1@kotsa.or.kr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3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안전관리처
경남	이보영 대리	055-270-0521 foryoung@kotsa.or.kr	경남창원시 의창구 차릉로 48번길44 스마트업타워 2층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안전관리처
울산	강인구 부장	052-256-9371 otugi@kotsa.or.kr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90-1 항사랑병원 8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안전관리처
제주	양은혜 선임연구원	064-723-3111 yeh0104@kotsa.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2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안전관리처

※ 추천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

※ 우편접수시 공단에 추천서 수령여부 확인 필수

5. 추천 제한 : 「붙임2(추천 제한)」 참조

- 기타 세부기준은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6. 수상 대상자 선정 발표

- 심사 후 개별 통지(2024년 11월 중 예정)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신문사 홈페이지 공고

7. 포상 시기

- 제1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 시 수여(2024년 11월 예정)

8. 유의사항

-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천 기관에서는 상기 사실을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할 것
-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할 것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경우,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주요공적 등을 국민생각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15일 이상)
- 포상 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 상훈관계법령과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또는 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3) 및 지역본부

[※서식변경 절대금지]

제공서식과 다른서식 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1. 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2. 포상 후보자 추천서 [개인/단체 공통]**
- 3. 공적요약서 [개인/단체 공통]**
- 4-1. 공적조서 [개인]**
- 4-2. 공적조서 [단체]**
- 5. 현지확인서 [개인/단체 공통]**
- 6.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 [공무원만 해당]**
- 7. 제출서류 자체 체크리스트**

※ 기타 증빙 자료(한글과 PDF 파일로 정리 제출)

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 단체)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명 (단체명)	추천훈격 (중복 선택 불가)	정부포상 / 장관표창 이사장표창
소속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5.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2024년 5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서식 2

포상 후보자 추천서

「교통문화발전유공」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남/여	소속*	
	주소*			소속주소*	
	개인전화*			소속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현			
주요공적*	휴먼명조 / 11pt / 줄간격 150% - 공개검증 및 심사활용 자료로 사실에 근거한 상세한 공적내용 입력 - 양식변경 금지 - 1페이지를 초과하는 단순 나열식의 공적 금지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공 적 요 약 서

[부문 : 교통문화발전유공]

소 속	직급 (직위)	성명/단체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년-월)	기 포상 (년.월.일)	주요 공적
000부	사무국장	000 (000) 53.02.17	00.6.10~ 19.12.13 (19-06)	국토교통부장관 (‘21.1) - 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 수상내역	휴먼명조 11포인트, 줄간격 150% 1. 서식, 글자크기 변형금지 2. <u>줄바꿈 엔터키 사용 금지</u> [서식2]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주요공적과 동일한 내용 입력

※ 소속, 직급 : 공식명칭으로 기재(약칭 불가) / 단체는 ‘-’ 표시

공 적 조 서(개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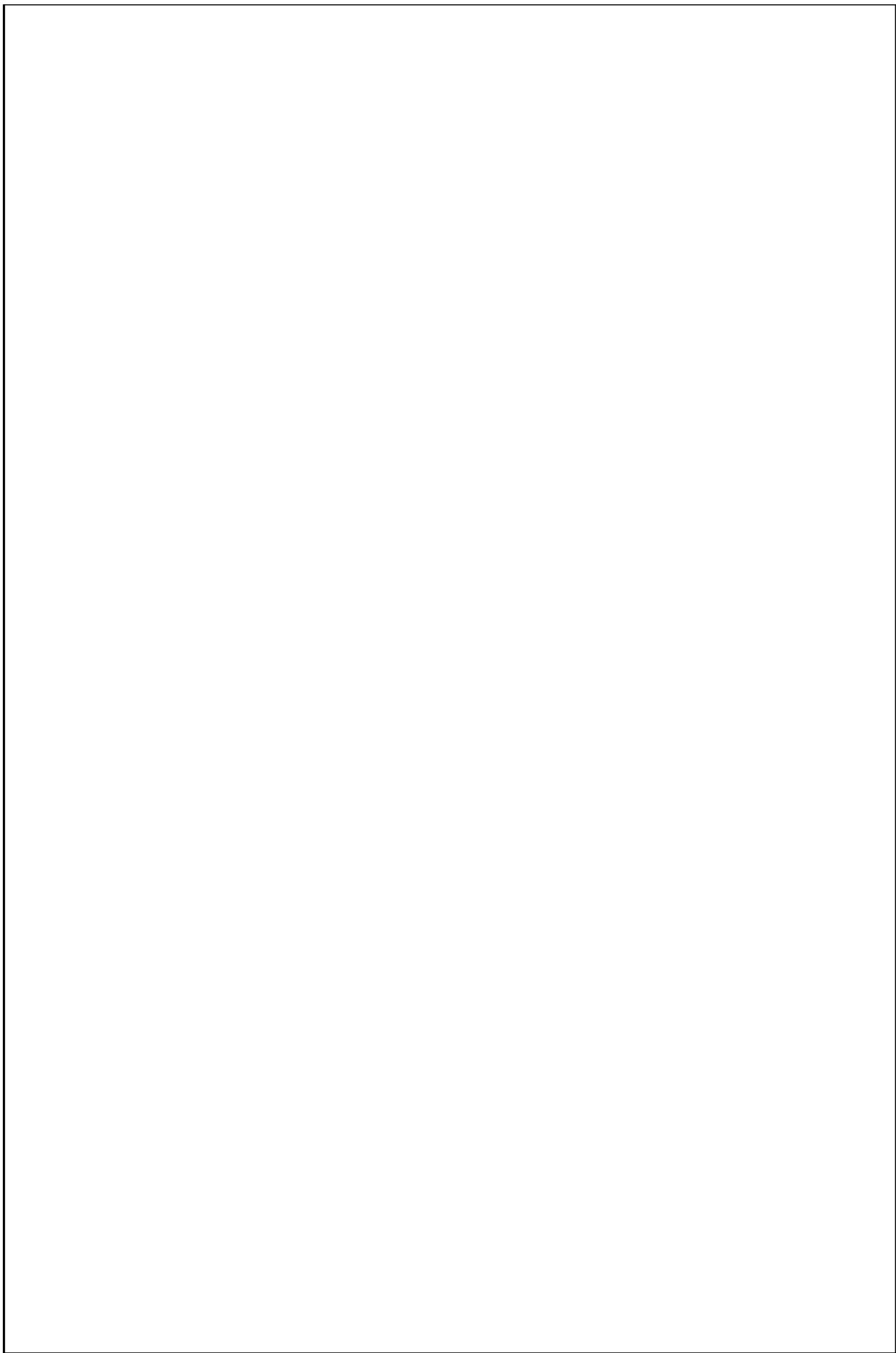
(앞 쪽)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직 업		소 속	소속은 부서단위까지 기재
직 위	상장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작성	직 급 · 계 급	법정(공식) 명칭
연락처(개인)		연락처(소속)	
주 소 (개 인)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기재 불가)		
주 소 (소 속)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기재 불가)		
추 천 훈 격	정부포상 / 장관표창 / 이사장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1)	00년 00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작성 글자수 확인 후 제출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 작성 방법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사자 ²⁾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추천관 ³⁾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 공적기간은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작성(15일 이상 반올림)
 2)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으로 작성 / 추천관과 동일인 불가
 3) 추천관은 추천기관 기관장(봉사단체장 불가)

주요 경력	
시작연월~종료연월	이력사항
2012.01.01~2013.12.31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명
2017.01.01.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공적 사항은 2,000자 이상 작성해야 함, 작성 후 글자수 확인 후 제출> ※ 공적 내용 작성 방법 ○ (작성 방식)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술식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X))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키 입력) 금지 ○ (작성 분량) 공적내용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u>최소 2,000자 이상</u>이 되도록 작성 ○ (작성 서식) 글자크기 12p, 장평 100, 자간 0, 글꼴 신명조로 작성 ※ 참고 사항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공 적 조 서(단체)

단 체 명 (한 자 명)	법정 기관명 * 약칭 사용 불가 ※ 작성예시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 국토부(X)		
법인 번호	13 자리 ※ 중앙행정기관은 법인번호 없으므로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 중앙행정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작성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 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 성명			
추천훈격	정부포상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4년5월 ※ 단체 설립일로부터 기산하여 작성
공적 요지(70자 이내) ※ 작성 방법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직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부서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단 체 연 혁	
시작연월~종료연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공적 내용 작성 방법 ○ (작성 방식)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술식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X))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키 입력) 금지 ○ (작성 분량) 공공적내용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최소 2,000자 이상이 되도록 작성 ○ (작성 서식) 글자크기 12p, 장평 100, 자간 0, 글꼴 신명조로 작성 ※ 참고 사항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 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현지확인서의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하여야 함

※ 추천대상자가 중앙행정기관일 경우 작성 제외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년 월 일)			
8) 일 반 직		~ (년 월)				13)교 원		~ (년 월 일)			
9) 별 정 직		~ (년 월)				14)군 인		~ (년 월 일)			
10)기 능 직		~ (년 월)				15)군 무 원		~ (년 월 일)			
11)고 용 직		~ (년 월)				16)기타()		~ (년 월 일)			
합 계 ㉑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㉒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㉑-㉒)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교통문화발전대회 서류검토 방법

순서	확인내용	세부내용	확인 여부
준비	제출서류 확인	원본, 한글파일, 스캔본 모두 제출여부 확인	
①	제출양식 확인	제출한 서류가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인지 확인 * 별도 양식으로 제출할 경우 <u>심사대상 제외될 수 있음</u>	
②	필수서식 제출확인	(일반인) 서식1 ~ 서식5 (공무원, 경찰) 서식1 ~ 서식4, 서식6 * 서식1: 동의서, 서식2: 추천서, 서식3: 공적요약서, 서식4: 공적조서, 서식5: 현지확인서, 서식6: 인사기록서	
③	증빙자료 제출확인	① 소속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공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속기준) - 사업용운전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 봉사단체 회원의 경우 입회확인서 등 -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 본인이 대표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필요	
④	[서식1] 서명확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확인 - 반드시 개인이 직접 서명	
⑤	[서식3~4] 공적기간 확인	작성한 공적기간과 증빙자료 공적기간 일치여부 확인	

⑥	[서식4] (공적조서) 작성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적요지, 공적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⑦	[서식4,5] 조사자 확인	서식4(공적조서)의 조사자와 서식5(현지확인서)의 확인자가 동일인 인지 확인	
⑧	[서식4] 추천관 확인	① 적절한 추천관* 추천여부 확인 * 지방자치장, 교육기관장, 경찰청·서장, 공공기관장, 운수단체장, 언론기관장, 공단본부장 등 위에 준하는 기관장 - 조합, 협회 이사장 : 가능 - 봉사단체장 : 불가능 → 공단본부장으로 변경 ** 추천관과 조사자가 동일해서는 안됨 ② 추천관 직인(날인)이 되어있는지 확인	
⑨	[서식2~3]	주요공적이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공개검증 및 심사 활용자료로 성실하게 작성	
⑩	[서식4] 글자수 확인	필수 글자수 확인 - 공적요지 70자 이내 - 공적 내용 2000자 이상	

○ 일반국민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2)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22~25쪽 참고)
-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

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단, 재직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제한
(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